



브리핑 자료

11월 3일(수) 08:00 이후 보도

대변인실	과 장	강대훈	전 화	044-205-7010
	담당자	권낙훈	전 화	044-205-7015
기획재정 담당관	과 장	신희범	전 화	044-205-7280
	담당자	오세윤	전 화	044-205-7286

2023년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바뀐다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필기시험 중 한국사·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경제 분야별로 필기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개편
- 가점 부여 항목 확대 및 체력·면접시험 비중 강화
- 소방 전공 고졸자에게도 경력경쟁시험 응시 기회 개방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업무 전문화와 시대변화에 맞게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방법을 개편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이 높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 2021.11.02. ~ 12.13.(41일간) / 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에 한국사 및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현재, 능력검정시험 대체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에만 시행되고 있으나 여기에 한국사도 추가하며, 대상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시험에도 확대 적용한다.
- 이는 법령에서 정한 점수 또는 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로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방직무 관련 기본지식과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과목으로 비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② 경력경쟁채용 각 분야별 시험과목 개편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 분야별 전문성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과목을 실무과목 중심으로 개편한다.
- 경력경쟁채용은 구급이나 항공처럼 관련 학문 전공자나 국가자격취득자 또는 현장근무경력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직무에 투입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나 현재 필기시험 분야별 과목은 변별력이 저하되고 전문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 이를 보완하고자, 현행 일반, 소방 및 항공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소방장(7급 상당)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일반과 기타분야로 개편하고, 기타분야는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성 및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국어 과목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고, 한국사, 영어 및 소방학개론을 공통과목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기타분야는 채용분야별로 전문과목을 지정하여 응급처치학개론(구급), 화학개론(화학), 컴퓨터일반(정보통신)으로 개편하였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또한 한국사, 영어 과목은 능력검정시험 대체제도 도입(예정)

현 행		개 정 안	
일반분야 (소방장·교·사)	국어, 영어(생활), 소방학개론	일반분야 (소방장·교·사) ※소방분야 포함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분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구급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기타 분야	화학
			정보통신

③ 가점부여 자격증 등 확대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를 확대하고 시험단계 가점부여 시점을 조정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 자격, 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분야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필기 시험 과목에서 제외되는 국어 능력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기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부여하여 필기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가 더 많이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비중 확대 및 특화

-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능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과 상식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체력과 면접 시험을 소방공무원에 적합하도록 특화하고 점수 적용비중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 현재,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의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의 반영비율을 개정안은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시험유형에 따라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시험단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면접	100	100	-
필기+ 면접	75/25	75/25	-
체력+ 면접	15/85	25/75	면접 ↑
실기+ 면접	75/25	75/25	-
필기+ 체력+ 면접	75/15/10	50/25/25	체력·면접↑
체력+ 실기+ 면접	15/75/10	25/50/25	체력·면접↑
필기+ 체력+ 실기+ 면접	40/15/35/10	30/15/30/25	면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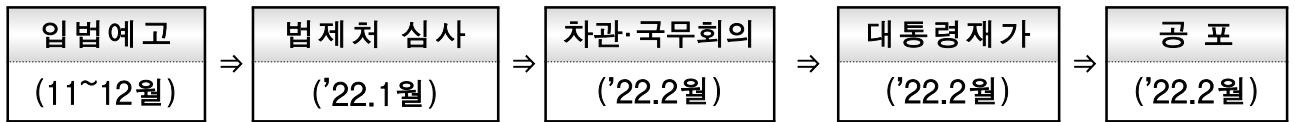
- 소방청은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순환식 체력시험 도입과 종합 인·적성검사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⑤ 소방학 전공 고졸자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기회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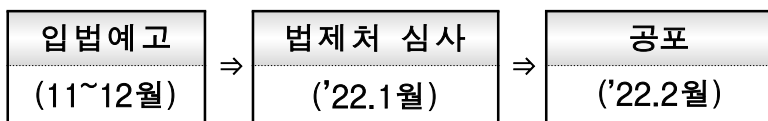
- 그동안 대학(전문대 포함)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 이수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소방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교육을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공개채용시험만 응시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응시분야에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현행 20세로 되어있는 최저응시연령도 18세로 하향하여 응시기회를 크게 늘렸다.
 -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소방청 예규)도 개정할 계획이다.
- 허석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채용시험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인재채용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향후 일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참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주요 개정사항

①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

- **대령**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 관련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체력·면접시험의 산정비율을 조정**(임용령 제46조제4항)

② 채용시험 등 가점 관련 규정 개정

- **대령** **부령**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점 제도 확대**(임용령 제42조, 시행규칙 별표 6)
 - 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1~5퍼센트) 등 가점분야를 확대하여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선발 기회 마련
- **대령** 간부후보생, 공채시험 **가점 부여 시기 조정**(임용령 제42조, 제44조)
 -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부여함으로써 필기시험 변별력 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③ 경력경쟁채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응시자 전문성 강화 및 범위 확대

- **대령**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분야를 세분화**하고, 필기시험 과목을 확대(3→4)(임용령 별표 5)
- **대령** **부령** **소방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경채 응시자격 확대**(임용령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4)
 -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

④ 채용시험 일부 과목 검정시험 대체 제도 확대

- **대령**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영어·한국사 과목에까지 확대** 적용(임용령 제44조, 별표 5, 9(신설))
 - 검정시험 대체제도 확대를 통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방 직무 시험 과목으로 정비하여 소방 관련 기본지식 및 소양 강화**

⑤ 소방분야 신산업·신기술 운용 역량 강화

- **부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드론)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격 확대(시행규칙 별표 2)
- **부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지자에게 소방간부후보생선발 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가점 부여(시행규칙 별표 6)

⑥ 기타 개정사항

- **대령** 채용·승진시험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임용령 제34조, 제49조 / 승진임용규정 제29조)
- **대령**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비해 광범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자관보 게재 대상범위 축소(임용령 제51조)
- **부령** 「임용령 시행규칙」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란 용어를 「임용령」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로 정비(시행규칙 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 **부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응시지역 등의 자격제한의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일원화(시행규칙 제23조제9항)
- **부령** 시험위원의 수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명에서 2원으로 조정(시행규칙 제27조)

참고 2

시험별 필기시험과목 변경사항(요약)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소방 간부 후보생 (6과목)	인문 계열	(필수)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 검정시험 대체 : 영어 (선택)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택2)				시험과목 : '22년 동일 * 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23.1월), 영어('12.1월)	
	자연 계열	(필수)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 * 검정시험 대체 : 영어 (선택)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택2)					
공개경쟁채용 (5과목)		(필수)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택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시험과목 : '22년 동일 * 검정시험 대체('23.1월) : 한국사, 영어	
경력경쟁채용	일반분야	소방정·령 (6과목)	(필수)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선택)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택2)		시험과목 : '22년 동일 * 검정시험 대체('23.1월) : 한국사, 영어		
		소방경·위 (6과목)	(필수)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선택)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택2)				
	소방장교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4과목) * 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영어			
	소방분야	소방사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3과목)				
	항공분야	소방위 이하 (3과목)	(필수) 항공법규, 항공영어 (선택)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택1)		시험과목 : '22년 동일 * 소방경 이하 (3과목)		
	구급분야	소방사 (4과목)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4과목) * 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영어		
	화학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4과목) * 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영어		
정보통신분야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4과목) * 검정시험 대체 : 한국사, 영어						

참고 3

고등학교 소방관련학과 응시기회 근거 마련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무분야	응 시 교 육 과 정
소 방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구 급 분 야	응급구조학과·간호학과·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화 학 분 야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기 계 분 야	기계과·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 기 분 야	전기과·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건 축 분 야	건축과·건축학과·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 4

자격증 등 가점분야 확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 (면허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잠수기능장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응급구조사(2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2종)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국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실용글쓰기검정 87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83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82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4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72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외 국 어	영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EIC 850 이상 TOEFL(IBT 92, PBT 580 이상) TEPS 800 이상 (New TEPS 452 이상) FLEX 763 이상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G-TELP Level 2 8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EIC 650 이상 TOEFL(IBT 57, PBT 487 이상) TEPS 600 이상 (New TEPS 327 이상) FLEX 553 이상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G-TELP Level 2 56 이상

	일본어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국어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국어·외국어 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로 한다.

참고 5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표

* 소방공무원임용령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Examination)을 말한다.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6**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

* 소방공무원임용령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제44조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7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개선안

□ 체력시험 개선안

*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우선, 소방직무 특성상 높은 체력이 요구되는 만큼 체력시험 비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여 '23.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22년 2차 연구용역을 통해 직무특성이 반영된 순환식 6개 시험종목을 확정하고 '24. 1월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임(50백만원)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구분	현행	개선	
체력시험 개선 연구용역	체력배점비율	15%	25% (법령개정 중)
	체력시험 종목	개별 6개 종목 ①악력 ②배근력 ③앞아랫몸앞으로 굽히기 ④제자리멀리뛰기 ⑤윗몸일으키기 ⑥왕복오래달리기 ※ 각 종목당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합격	순환식 10개 종목 제시 (1차 연구결과 10개 종목 중 6개 선택 필요) ①버피테스트 ②호스끌기 ③호스당기기 ④장비움기기 ⑤메디신볼벽던지기 ⑥누워서 당기기 ⑦중량썰매밀기 ⑧옆드러기기 ⑨요구조자 옷깃끌기 ⑩왕복오래달리기
	연구내용	既 완료('20년 1차 용역) ① 실태분석 ② 종목 개선방안	'22년 2차 용역 예정 ① 종목 확정 ② 남·여 편차 or 남·여 동일 ③ 점수등급 설정 ④ 점수제 or 통과제

□ 면접시험 개선안

* 소방공무원임용령

- 화재·긴장연속 등 소방직무 적격성 검증 강화를 위해 면접시험 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하여 '23.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또한, '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소방직무 특수성이 반영된 문항을 개발하여 면접시험의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임(200백만원)

구분	현행	개선	
인·적성 검사 개발 연구용역	면접배점비율	10%	25% (법령개정 중, 인적성검사결과지 면접 평정자료로 활용)
	문제구성 / 결과산출	시·도별 상이 / 결과지 상이 * 균등한 인재선발 애로점 발생	전국동일 / 결과지 동일 * 동일한 데이터 관리 및 통일된 검증 가능
	검사내용	단순 정신병리, 성격진단 등 평가 * 예산 투여 대비 형식적이고 실효성 부족	소방공무원 직무특성 반영한 문항 평가 (성격·인성·FMAT 항목 등)

참고 8

전국 고등학교 소방학과 현황

□ 현 황

○ 총 7개 학교('22년 3개 학교 인가예정 포함)

구 분	운영 중	인가예정	비 고
학 교	4개교	3개교	
학 생	251명	52명	경북 영천 금호공고 학과 개편 예정

※ (최초) '20.3월 강원 영월 한국소방마이스터고 개교 1기 신입생 입학

학교명(소재지)	학교장	소방학과 운영(인가) 현황	비고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강원 영월)	최석민	소방안전관리과 1, 2학년 각 4학급 총 159명	
공주정보고등학교 (충남 공주)	신현도	소방안전과 1학년 1학급 학급당 20명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	강선구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전기과 2학급씩 학급당 24명 예정	
경기청담고등학교 (경기 평택)	이현로	2022학년도 소방안전과 2학급 학급당 23명 예정	
조일고등학교 (대구)	박동환	2020학년도 소방안전과 1학급 학급당 24명	
부산디지털고등학교 (부산)	전성우	2022학년도 소방안전과 2학급 학급당 19명 예정	
금호공업고등학교 (영천)	최인웅	2022학년도 학과개편 예정	